

“사찰 거주하는 처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취소돼야”

이슈 판권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 사찰법인에 패소 판결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청소를 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사찰 내 설립된 B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7월16일 C씨는 B법인에 입사해 법당 청소, 야간 순찰활동, 공양간 정리등 일을 하던 중 지난해 5월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서면통지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며 C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B법인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B법인 측은 C씨가 지난해 4월10일 여가를 다쳐 수술을 해야 한다며 먼저 사직의사를 내 비쳤고, C씨는 업무가 아닌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법인 측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B법인 측에서 근무시간을 8시~17시로 정해준 점, 출근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 매일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점, 비록시장에 구인공고를 낸 점을 참작해 C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C씨가 휴직계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C씨에게 퇴실 통보를 한 것 등에 대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법인 소속 직원들이 처사 구인면접과 업무조정을 했고, 처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계좌도 법인의 대표자다”며 “법인과 사찰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 있어 법인을 C씨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대병원 직원, 청소노동자에 폭언”

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법

공포안 의결...2022년 상반기 보상

노조 “가해자 징계없이 피해지만 업무 복귀 강요”

병원 “사실조사 착수, 용역업체에 피해자 보호 요청”



19일 오전 전남대학교 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내 폭언, 협박 사태와 관련해 해당 직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원무과 직원이 욕설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파문이 일고 있다. 병원 노조는 욕

설 직원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직원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에 감사 착수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전대병원 원무과 직원 A씨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B씨가 다른 노동자와 청소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폭언에 위협을 느낀 B씨가 고발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자 뒤쫓아가 “내 눈에 잘못 걸리면 죽여버린다. 어디서 나한테 대꾸하느냐”, “X같은 X”, “싸가지 없는 것”이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 사무실에는 지부장과 간부들이 다수 있었고 A씨가 폭언하는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현재 B씨는 극심한 충격과 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 측에 A씨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병원 측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병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도급회사에서는 피해 여성 노동자만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징계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피해자와 연관이 되지 않아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병원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병원 측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22일 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 용역업체에 피해자 보호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번 주 내로 진료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폭력방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건과 정원 2건을 병합 심사한 국방위원회 대안이며,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며 내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 지역 거주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방부장관이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율러 국방부 장관은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1년 단위로 지급되며 전입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배상금 지급기준은 85~90웨클(WECPNL)의 경우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이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단위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영향도 조사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뉴스1

경찰, ‘황제 예방접종’ 의혹 목포시 보건소 압수수색

예방접종 지목 공무원,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독감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을 보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목포시 보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오후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목포문화연대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포

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서는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호남신문 062)229-6000 062)222-5548

Advertisement for '영유아건강검진' (Child Health Check) featuring a child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government support.